

노원구 공고 제 2026-1681호

소·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7일

노원구청장

1. 목적 : 구제역 확산 차단

2. 지역 : 노원구

3. 이동제한 대상 : 소·돼지 분뇨(생분뇨)

○ 다만,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

4. 명령의 내용 : 소·돼지 분뇨(생분뇨)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*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

○ (예외) 이동거리가 가깝거나* 생활권역이 같은**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

5. 기간 : 2026.10.7. 부터 2027.2.28. 까지

6. 기타사항

가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

이동·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, 진입한 사유(업무 등)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

나.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, 항체검사(SP, NSP) 및 항원검사(분뇨)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

○ (절차) 분뇨처리업체(또는 농가)에서 관할 시·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→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(가축 및 분뇨) →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(반입·반출 시도,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)에 통보

다. '나'에 따른 항체검사(SP)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

라.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2서식] <개정 2021. 10. 14.>

이동승인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한 즉시
구분	[] 역학관련 이동제한	[] 일시 이동중지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 :)	
신청사항	이동사유		
	이동 기간	년 월 일	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
	방문장소(경유지 포함)		
	이동 방법	[]차량(차량번호 :), []대중교통, []기타()	
비고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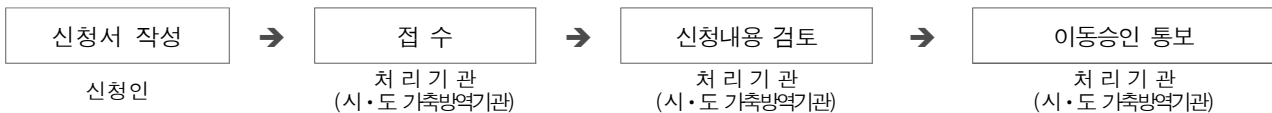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·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·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

처 리 절 차



□ **(이동승인 기준)** 분뇨 반출량,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7일로 일괄 적용

- 이동승인서 유효기간(7일)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
 -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(항원·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)하고 이동승인서 발급
 - * (예시) '26.11.2일 이동승인 신청 → 11.4일 이동승인 → 11.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
 -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, 항체검사(SP, NSP) 및 항원검사(분뇨) 새로 실시
 - * (예시) '26.11.2일 이동승인 신청 → 11.4일 이동승인 → 12.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·항원·항체검사 실시

□ **(시료채취 기준)** 환경(분뇨)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

- 항원검사 :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 (분뇨투입구·반출구, 상층부·하층부 등)
- 항체검사 :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

축종 구분			검사두수	시료채취 기준
소			16두	6개월~12개월령 4두 포함
돼지	일관 사육	번식돈	3두	도태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모돈 또는 환축·위축돈 1두 포함
		비육돈	16두	105~120일령 8두, 120~140일령 8두 *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·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
	비육		16두	105~120일령 8두, 120~140일령 8두 *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·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

* 기타 항체검사 시료 채취 세부 기준은 “2026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변경 보고(알림)(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-2858, ‘26.7.1)” 참고